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연 월 일	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어린이집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 (법률 제19898호 2024. 1. 2. 공포)이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평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에 위임된 어린이집 평가결과의 효력중단, 재평가, 평가 결과의 공표 등 평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현행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양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20103호, 2024. 1. 23. 공포)이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규칙에 규정

2. 주요내용

-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종류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추가(안 제2조)
- 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기준 중 어린이집평가등급 반영 요건을 어린이집평가 재평가 발생 사유 요건으로 변경(안 제25조제1항)
- 다. 과정적·컨설팅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발생시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공표를 영역별 공표로 구체화함(안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 라.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요건 중 평가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를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안 제32조의4)

- 마. [별표4]의 보육실습 어린이집 선정 기준을 어린이집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으로 변경(안 제12조제1항 관련)
- 바. [별표9] 어린이집 행정처분 세부기준에서 어린이집평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해 평가 확인 점검 거부 요건 삭제(안 제38조제1항 관련)
- 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행규칙 기 개정 사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 2022. 6. 22 개정)반영해 별지제19호서식부터 별지제21호서식 제출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상담전문요원”을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의 제목 “(평가등급의 조정)”을 “(평가결과의 효력중단)”으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확인점검)”을 “(재평가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주기를 조정하여야 하며, 재평가 이후 다음번 평가 등의 주기는 제31조제1항에 따른다.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결과”를 “결과(영역별 평가결과를 포함한

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를 “교육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의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

4. 평가 진행상황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2조의4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별표 4 비고 제2호다목 전단 중 “다른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을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또는”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카목 위반행위란 카목 중 “평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을”을 “평가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을 “평가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센터 개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성명	생년월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보육 교직원	센터장	명	보육전문요원	명
	전산원	명	영양사	명
	간호사	명	기타	명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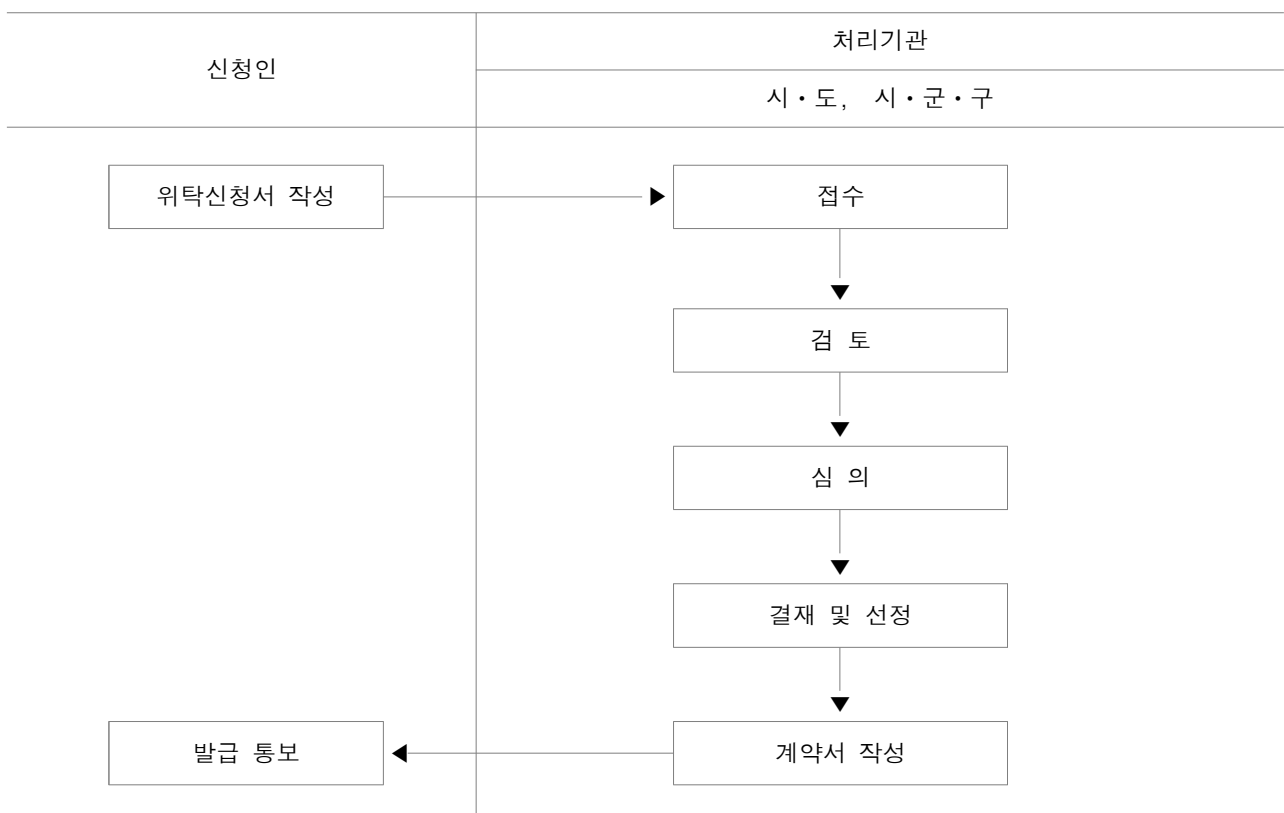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 명칭:
- 소재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한자:)
- 대표자 생년월일:
- 센터장 성명: (한자:)
- 센터장 생년월일:
-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육아종합 지원센터 의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법인의 정관·단체의 회칙·규약			

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대표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정관 등)의 위탁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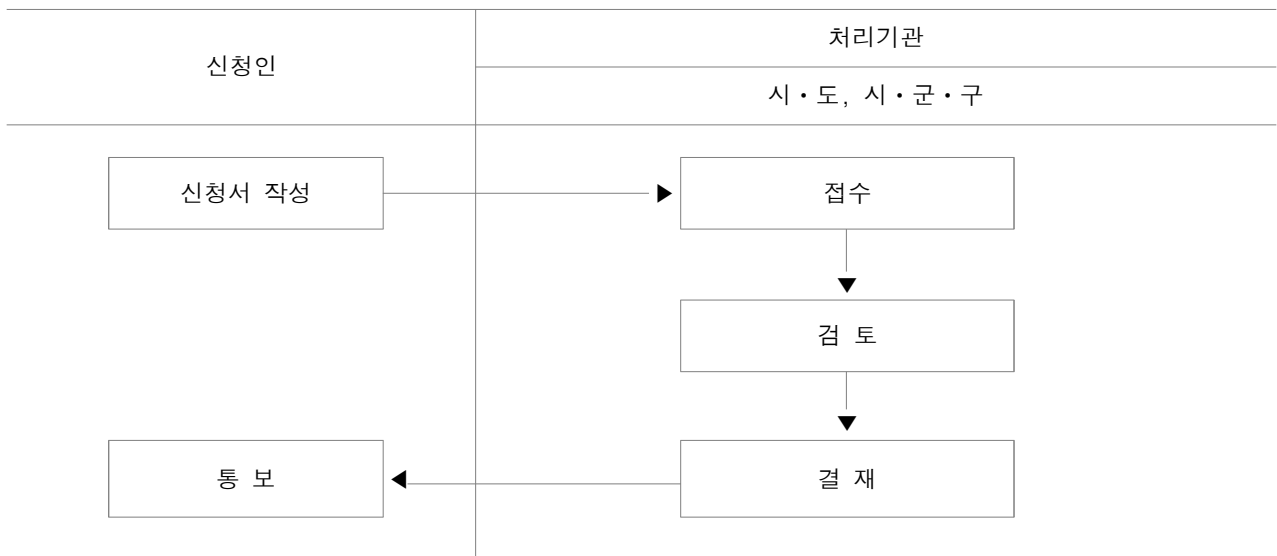
시 • 도지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첨부서류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및 <u>상담전문요원</u>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 ----- ----- ----- ----- ----- <u>상담전문요원 및 영 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u> ----- -----.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1. 2. (생략) 3. <u>법 제30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흡에 해당한 경</u>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①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u>

우

4. ~ 10. (생략)

② (생략)

제32조(평가등급의 조정) (생략)

제32조의2(확인점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서면점검, 면담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점검 대상인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한 경우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평가등급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평가등급 조정의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4.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평가결과의 효력중단)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재평가의 실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주기를 조정하여야 하며, 재평가 이후 다음번 평가 등의 주기는 제31조제1항에 따른다.

<삭제>

제32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

-----.

1. -----

<u>결과</u> 2. (생략) 3. <u>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등급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평가등급</u> 4. <u>그 밖에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결과를 비교·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u> ② <u>보건복지부장관</u>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u>보건복지부</u>,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③ <u>보건복지부장관</u>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제32조의4(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①·② (생략)	<u>결과(영역별 평가결과를 포함한다.)</u>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의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u> 4. <u>평가 진행상황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u> ② <u>교육부장관</u>----- ----- <u>교육부</u>, ----- ----- ----- ----- ----- ----- -----. ③ <u>교육부장관</u>----- ----- ----- ----- ----- ----- -----. 제32조의4(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2. (생략) 3. <u>공공형어린이집 지정·운영 계획 공고일 당시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평가등급이 최상위 등급일 것</u> 4. (생략) ④·⑤ (생략)	음) ③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u>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